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 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캔디비(CANDYBEE)]

정 보 공 개 서

(주)오피스넥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오피스넥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5층 A501, A502, A503호
(구의동, 웰츠타워)]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02)546-4007]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02)546-4008]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사업팀 Tel. 02)3442-2201]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4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9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3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4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20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33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35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37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39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해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오피스 넥스	캔디비(CANDYBEE) 외 4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5층 A501,A502,A503호 (구의동 ,웰츠타워)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7.9.17.	2007.10.1.	조성우, 김영일	02)546-4007	02)546-4008
	법인등록번호	110111-3755498	사업자등록번호	114-86-62046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조성우 (대표이사)	(주)오피스넥스	캔디비(CANDY BEE) 외 4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5층 A501,A502,A503호 (구의동 ,웰츠타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조성우, 김영일	02-546-4007	02-546-400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김영일 (대표이사)	(주)오피스넥스	캔디비(CANDY BEE) 외 4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5층 A501,A502,A503호 (구의동 ,웰츠타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조성우, 김영일	02-546-4007	02-546-400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이태이 (이사)	(주)오피스넥스	캔디비(CANDY BEE) 외 4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5층 A501,A502,A503호 (구의동 ,웰츠타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조성우, 김영일	02-546-4007	02-546-400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주)오피스큐	오피스큐 (OFFICEQ)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5층 A501,A502,A503호 (구의동 , 웰츠타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선장덕, 이진재	02-546-4007	02-546-4008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캔디비(CANDYBEE)]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캔디비(CANDYBEE)	
상 호	캔디비(CANDYBEE) OO점	
상표(서비스표)	캔디비 CANDYBEE	
광 고	-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절삭,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14,980,450	10,704,675	4,275,775	49,921,490	1,023,294	1,111,435
2023년	16,575,212	12,406,987	4,168,225	44,806,513	299,493	63,512
2024년	14,924,650	10,738,213	4,186,436	42,387,291	322,115	68,209

※그 근거자료는 별첨 1,2와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절삭,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조성우	대표이사	2008.8.16 ~ 현재	(주)오피스넥스 대표이사	기업경영
	김영일	대표이사	2024.7.1 ~ 현재	(주)오피스넥스 대표이사	기업경영
	이태이	이사	2024.7.1 ~ 현재	이사	이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3	0	68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오피스넥스	가맹사업경영	2000.8.16. ~ 현재	오피스넥스(OFFICENEX-등록번호: 20080100007) 라는 사무용품업
			2021.9~현재	오피스 25 (등록번호:20212291)이라는 문구업
			2022.9.~현재	문구야 사랑해(등록번호: 20220916)라는 문구업
			2021.10.6.~현재	빵꾸똥꾸 문구야! (등록번호 :20212290)라는 문구업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오피스큐	가맹사업경영	2020.03 재등록 ~ 현재	오피스큐 (OFFICEQ) (등록번호:20200449)라는 사무용품업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캔디비 CANDYBEE (서비스표)					-

※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캔디비(CANDYBEE)] 가맹사업 현황

1. [캔디비(CANDYBEE)]를 시작한 날: 해당 사항 없음
(직영점을 시작한 날 : 해당 사항 없음)

2. [캔디비(CANDYBEE)] 연혁

가맹본부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오피스넥스	캔디비(CANDYBEE)	조성우, 선장덕	해당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4길 4, IB타워 7층
(주)오피스넥스		조성우, 김영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4길 4, IB타워 7층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5층 A501,A502,A503호 (구의동 ,웰츠타워)

3. [캔디비(CANDYBEE)] 업종

영업표지	업종	
캔디비(CANDYBEE)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 도소매	문구, 액세서리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캔디비(CANDYBEE)]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	-	-	-	-	-
서울	-	-	-	-	-	-	-	-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바로 전 3년간 [캔디비(CANDYBEE)]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	-	-	-	-	-
2023	-	-	-	-	-	-
2024	-	-	-	-	-	-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 [캔디비(CANDYBEE)]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캔디비(CANDYBEE)]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주)오피스넥스	오피스넥스 (Officenex)	20080100007	사무용품	56/1	53/0	52/1
		오피스 25	20212291	문구	0/0	4/12	8/3
		문구야 사랑해	20220916	문구	2/1	3/1	3/1
		뽕꾸똥꾸 문구야!	20212290	문구	201/15	268/2	260/1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오피스큐	오피스큐 (OFFICEQ)	20200449	사무용품	17/0	17/0	17/0
-----------------	---------	-------------------	----------	------	------	------	------

※ 2024년 자료는 정기변경 시 보완 예정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 년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²당	상한	면적 3.3m²당	하한	면적 3.3m²당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 [캔디비(CANDYBEE)]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개)	평균 영업기간(일)
----	---------------	------------

2024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나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하나은행	하나B2B에스크로 (하나은행 강남대로점)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59	1599-1114 (02-508-111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하나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하나은행]에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가맹본부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하나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해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캔디비(CANDYBEE)]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캔디비(CANDYBEE)]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귀하는 가맹점 사업을 개시 또는 계속 하는데 있어 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당사	예치	
보증금	당사	예치 또는 예치하지 않음	현금 또는 담보목적물
기타 비용	당사 또는 자율	"해당없음"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3,300				
최초 교육비	1,100	계약 체결일	교육 전	교육 이후	
출장비	2,200	계약 체결일	출장 전	출장 이후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20,000]			
보증금 또는 담보목적물	[20,000]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가맹계약 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시	

※ 귀하는 담보목적물로 제공할 경우, 부동산 담보(근저당 설정) 및 기타보증(보증보험 증권)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설정관련 비용은 모두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보증금 부가세 없음)
합계	23,300
최초 교육비	1,100
출장비	2,200
보증금(현금 또는 담보목적물, 보증보험증권)	20,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6]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41,450]	[4,145]			10평기준
최초 공급상품	당사	20,000	2,000	①인테리어 착공 3일전 70%	공사 착공 전 계약 해지	별첨3
인테리어 (매대 포함)	당사 또는 자율	11,000	1,100		발주 전 계약 해지	
간판	당사 또는 자율	5,500	550	②인테리어 준공검사 직후 30%	발주 전 계약 해지	
무인 키오스크	당사	4,950	495		상품 미공급시	1대 기준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가맹사업팀 (02)3442-2201)	담당자 배정 → 가맹희망자와 희망 점포 답사 → 현장 확인 → 담당자의 상권 현황 설명 및 영업지역 중복여부 확인 → 가맹희망자 면담 → 가맹희망자가 최종 결정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 본사 및 협력업체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 가맹희망지역과 가까운 곳의 매장 현장 교육 실시 - 가맹본부의 정책사항 준수 - 당사와 함께할 진취적이고, 절대 신용 있으신 분	가맹점 운영능력 및 운용자금 소유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캔디비(CANDYBEE)]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인테리어의 경우 점주자율로 시공할 경우 가맹계약에 비포함 됩니다.

8) 한편, 당사는 분할 납부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营业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로열티	당사	월 220	익월 5일	월 기간 경과 전	월 기간 경과 후	
키오스크	당사	월 110	익월 5일	월 기간	월 기간	

전산사용료				경과 전	경과 후	
상품대금	당사	주문가액	당월 20일 ,익월 5일	반품 조건에 따름		반품 시 가맹계약 서 제19조참고
광고분담금	행사에 따라 다름	행사별 분담	별도 공지	행사에 따라 다름		광고진행 시
점포환경 개선비용	당사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최초 인테리어비 납입방법과 동일함			당사
지연이자	당사	연 12%	매월말	채무 완전변제 시 미발생	미변제 시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시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기준: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 기	비 고
회계관리	매출, 전산시스템유지 보수 키오스크 프로그램 유지보수	연중	문의 : 가맹사업팀 02)3442-2201
상품관리	매장 내 상품진열	연중	문의 : 가맹사업팀 02)3442-2201
매장청결 및 위생	매장 내 청결 및 위생 관리	연중	문의 : 가맹사업팀 02)3442-2201
점포외관	점포외관 청소상태 관리	연중	문의 : 가맹사업팀 02)3442-2201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캔디비(CANDYBEE)]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으며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8]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제31조] 참조

귀하는 가맹계약이 중도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을 때에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

하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대한 채무 전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아래에서 지정한 조치를 실행하고 가맹본부에게 10일 이내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캔디비(CANDYBEE)]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 기호도 사용하지해서는 안 됩니다.

② 매뉴얼, 기타 가맹본부로부터 대여 받았거나 제공받은 문서·도면·기타 도서 전부를 모든 사본과 함께 가맹본부에게 반환하거나 가맹본부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파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캔디비(CANDYBEE)]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품목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는 소매업에 해당되어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캔디비(CANDYBEE)]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캔디비(CANDYBEE)]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캔디비(CANDYBEE)]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가맹본부 출고상품(별첨3 참고)	왼쪽에 기재된 상품은 카달로그상에 등록된 상품으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 3회 위반: 서면경고통지 4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가격통보	비고
상품	별첨3 참고	1. 연1회 : 카달로그 발행시 제공 - 가격책자 제공 및 데이터 제공 2. 가격 변동 시 수시 제공	카달로그 발행일 (매년10월~11월말경)

		- 데이터 제공	
--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 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문구류, 악세사리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빵꾸똥꾸 문구야! 문구의 민족, 문구야 사랑해, 오피스넥스(Officenex)	오피스큐 (OFFICEQ)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1. 로드샷의 경우 반경 200M 2. 특수 상권의 경우 해당 특수상권의 건물전체 3. 1과 2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 분리된 상권으로 인정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

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자에게 3회 이상 서면경고 통지하며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캔디비(CANDYBEE)'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별첨4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별첨5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캔디비(CANDYBEE)]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 계약상의 상품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 33조 제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 계약서 제18조 제2항 또는 제3항 제5호를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정당한 시정요구를 6개월에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가맹계약서 제29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제3조 제2항,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4조를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6조 제1항의 가맹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납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8조 제1항의 담보 또는 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9조 제1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12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28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36조 제3항의 개점일을 사전동의 없이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7조 제1항, 제2항의 대금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기타 본 가맹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계약서 제29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영업 환경 변화에 따른 영업 방침 및 업무관리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없음"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가맹사업팀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가맹사업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사업팀 02)546-8250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보증금(양도인이 반환 또는 설정해지했을 경우), 교육비 금백십만원(₩1,100,000-부가세 미포함), 출장비 금이백이십만원(₩2,200,000-부가세 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그 경우 신규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 가맹사업팀 검토 (면담포함 30일 가량 소요) →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승인 여부 통지 (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본부 승인 시 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캔디비(CANDYBEE)]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문구류, 악세사리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종 (동일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동일업종) 신청 → 당사 가맹사업팀 검토(시장조사포함, 30일가량 소요)	문의: 가맹사업팀 02)3442-2201

	→ 허가여부 통지 → 완료	
--	----------------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캔디비(CANDYBEE)]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일 14시간 이상 점포 운영	1년 365일 영업	문의 : 가맹사업팀 02)3442-220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즉시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 담당자에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가맹점주를 포함한 1명 이상	대체 가능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회계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키오스크 사용, 매출 및 시스템 유지 확인	수시 협의방문	가맹사업팀	
상품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가맹본부 상품 진열 상태확인	수시 협의방문	가맹사업팀	
매장 청결 및 위생	담당자 매장 방문 → 매장 상품진열	수시 협의방문	가맹사업팀	

	및 청결도 확인			
점포 외관 등	담당자 매장 방문 → 점포의 외관 등 규정된 CI사용 확인	수시 협의방문	가맹사업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캔디비(CANDYBEE)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	가맹점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50%	50%	광고 계획통지 →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	가맹점의 부담액은 가맹점 총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산정
	상품+가맹점 모집 광고	60%	40%		
	가맹점모집 광고	100%	-		
전국 판촉행사	할인행사 및 기타 행사	협의하여 시행하되 행사 별로 다름		판촉 계획 공고 → 가맹점 회의시 판촉 계획 및 실행안 결정 → 종료 후 부담금 공지	경우에 따라 가맹본부 추가부담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광고, 판촉 활동에 필요한 내용 및 상품의 가격인하 부분은 가맹본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① 가맹점 사업자는 노하우 등 본 계약에 근거하여 알 수 있었던 가맹본부의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본 계약 이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 ② 가맹점 사업자와 그 소속직원은 매뉴얼, 기타 가맹본부로부터 대여 또는 제공받은 서류, 도면, 전자저장장치, 도서 등을 엄준히 관리하고 가맹본부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이를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열람, 양도, 대여, 임대,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③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와의 문서상의 동의 없이 영업상의 기밀을 외부로 누출하였을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형사상의 책임 및 민사 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라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침해일 익일부터 위약별로 1일 당 금이십만원(₩200,000) 씩 당사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②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일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상품대금의 20% + 로열티) * 잔여 개월의 산정 가액을 가맹본부에 위약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운영개월 수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40%로 전단의 산정기준을 대체합니다.

③ 귀하는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는 귀하가 입증하도록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0일 내외	15~16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 - 50	-
사업설명. 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10개 현황문서 제공	D - 45 ~ 40	-
최종협의	- 개설 승인. 계약서 제공	D - 39 ~ 35	-
가맹계약서 체결	- 계약 체결	D - 30	-
제반서류	- 사업자등록증 - 근저당설정	D - 26	-
초도상품	- 상품발주서 작성 - 상품발주 - 상품입고	D - 25	-
인쇄/ 판촉	- 시안 작업 - 발주 - 매장 입고	D - 20	-
인테리어	- 상품진열대 설치 - 내부인테리어 공사 - 외부 간판	D - 15	-
키오스크	- 장비구입 - 매장 설치 / 교육	D- 15	-
전신 / 전화	- 전화 및 인터넷 준비 - 냉·난방기 준비 - 매장시공	D - 15	-

통신장비	- 팩스 / 카드이지체크기 준비 - 매장 시공	D - 15	-
교육 실시	- 상품교육 - CS 교육 - 전산 교육	D - 10	-
카드로그	- 매장 입고	D - 10	-
본사비품	- 매장 입고	D - 5	-
매장 오픈	- 영업 시작	D - 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항 목	내 용	비 고
점포환경개선 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 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지급절차 (일반)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지급절차 (분할)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경영지도	가맹점 교육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안 (경영지 도내용, 기간, 소요비용 등 포함)을 가 맹점사업자에게 제시→경영지도 후 결 과 제시또는 인력파견 결정	가맹본부 필요 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또는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교육비 등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캔디비(CANDYBEE)]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캔디비(CANDYBEE)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 고
신규 교육	* 매장운영방식 * 상품관련내용 * 전산관련내용 - 키오스크 사용 - 상품 입.출고 관련	본사 및 신규점 현장교육	1주일	필수교육
특별 교육	* 점포운영 관련 사항	현장 교육 또는 집체 교육	별도 통지	필요 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캔디비(CANDYBEE)]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1주일	1,10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일정기간	별도협의	필요 시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또한 대표자회의 또는 가맹본부가 주최하여 시행하는 캔디비(CANDYBEE) 관련행사 및 교육·훈련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적으로 불참하여 캔디비(CANDYBEE)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판단하여 3회 이상 서면경고 통지를 한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구분	지역	점포명	주소
1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고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별첨 1. 2022/2023/2024년 재무상태표

별첨 2. 2022/2023/2024년 손익계산서

별첨 3. 초도 상품 및 권장판매가격

별첨1. 2022/2023/2024년 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2. 2022/2023/2024 년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3. 초도 상품 및 권장판매가격

별도 파일 참고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정보공개서 제공에 대한 수령 확인서

(가맹본부 용)

가맹희망자

성 명 : (인 또는 사인)

주 소 :

생년월일 :

연 락 처 :

가맹본부

업 체 명 : (주)오피스넥스 대표이사 조성우(인), 김영일 (인)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6, 5층 A501, A502, A503호 (구의동 ,웰츠타워)

브랜드명 : 캔디비(CANDYBEE)

연 락 처 : 02 - 546 - 4007

1.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아래의 각 사항이 명시된 정보공개서를 20 년 월 일 가맹본부의 (실재교부장소)에서 (교부방법 기재)으로 교부받아 정보공개서 전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1) 캔디비(CANDYBEE)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 20 년 월 일

(2) 캔디비(CANDYBEE) 정보공개서 목차

- 가.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다.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범위반사실
-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마.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바.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사.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아. 교육·훈련프로그램
- 자.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2. 본인은 정보공개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대리인으로부터 충분히 설명 받았습니니다.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본인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유출 또는 제3자에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본인이 모두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정보공개서 제공에 대한 수령 확인서

(가맹희망자 용)

가맹희망자

성 명 : (인 또는 사인)

주 소 :

생년월일 :

연 락 처 :

가맹본부

업 체 명 : (주)오피스넥스 대표이사 조성우(인), 김영일 (인)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6, 5층 A501, A502, A503호 (구의동 ,웰츠타워)

브랜드명 : 캔디비(CANDYBEE)

연 락 처 : 02 - 546 - 4007

1.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아래의 각 사항이 명시된 정보공개서를 20 년 월 일 가맹본부의 (실재교부장소)에서 (교부방법 기재)으로 교부받아 정보공개서 전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1) 캔디비(CANDYBEE)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 20 년 월 일

(2) 캔디비(CANDYBEE) 정보공개서 목차

- 가.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다.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범위반사실
-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마.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바.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사.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아. 교육·훈련프로그램
- 자.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2. 본인은 정보공개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대리인으로부터 충분히 설명 받았습니니다.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본인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유출 또는 제3자에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본인이 모두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인근가맹점 현황 제공확인서]

가맹희망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주민번호 :

연 락 처 :

가맹본부

업 체 명 : (주)오피스넥스 대표이사 조성우(인), 김영일 (인)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6, 5층 A501, A502, A503호 (구의동 , 웰츠타워)

브랜드명 : 캔디비(CANDYBEE)

연 락 처 : 02 - 546 - 4007

1. 본인은 가맹본부에게 아래와 같이 계약체결 예정지 인근 가맹점현황 리스트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수령여부	
		수령날짜	확인
점포예정지 확정 시	정보공개서와 동시수령		
점포예정지 미 확정시	점포 확정 후 정보공개서와 별도로 추후 수령		

2. 인근 가맹점 현황

No	가맹점 상호	주소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20 년 월 일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팀(02-3442-2201)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